

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12. 1.] [총리령 제1656호, 2020. 12. 1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 제정·개정문 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범위를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영업자로 확대하고, 가축의 도살 전에 해당 가축의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하지 않은 도축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경고,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,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며, 그 밖에 법령의 인용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 제정·개정이유 전체 제정·개정문

●총리령 제1656호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12월 1일

국무총리 (인)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가목 중 "20억원"을 "5억원"으로 한다.

제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9조의4제7호"를 "법 제9조의4제8호"로 한다.

별표 10 제8호가목(3) 본문 중 "제4호가목"을 "제5호가목"으로 하고, 같은 목 (3) 단서를 삭제한다.

별표 11 제2호가목 표의 제1호가목3) 및 4)를 각각 4) 및 5)로 하고, 같은 표의 제1호가목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의 제1호가목4)[중전의 3)] 중 "1) 및 2)"를 "1)부터 3)까지"로 한다.

3) 가축의 도살 전에 해당 가축의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	경고	영업정지 10일	영업정지 20일
--	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1 제2호다목 표의 제11호라목 중 "수입신고"를 "수입신고"로 한다.

별표 14의2 제3호의 위반내용란 중 "법 제9조제5항에 따른"을 "법 제9조제6항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"제8조제2항, 제12조제2항·제3항, 제18조, 제33조제1항 또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"을 "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표 제5호의 위반내용란 중 "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"을 "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6호의 위반내용란 중 "제22조제2항·제5항, 제24조 또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"를 "제22조제2항·제5항 또는 제24조"로 하며, 같은 호의 근거법령란 중 "법 제9조의4제7호"를 "법 제9조의4제8호"로 하고, 같은 표 제7호 및 제8호의 근거법령란 중 "법 제9조의4제7호"를 각각 "법 제9조의4제8호"로 하며, 같은 표 제9호의 위반내용란 중 "제2호라목"을 "제2호마목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0호의 위반내용란 중 "제2호바목"을 "제2호사목"으로 하며,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(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)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같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	법 제9조의4제7호 및 제8호	인증취소
--	------------------	------

별지 제21호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